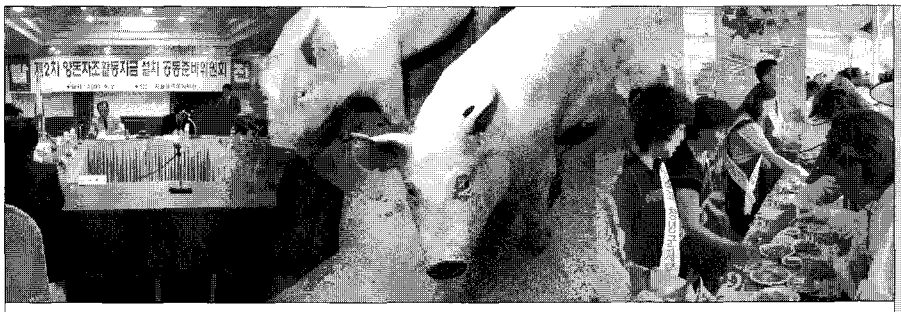

특 집

양돈자조금제도의 어떻게 시행되나?

양돈자조금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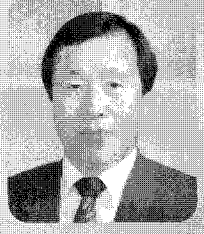

박 종 수 교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92년 최초로 시도되었던 양돈자조금사업이 무임편승자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수년동안 지지부진해 오다가 지난해 5월에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일명 축산자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의무 자조금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무 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축산자조금법의 제정은 양돈업계를 비롯한 우리 축산업계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동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양돈산업에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이하 자조금이라고 함)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는 바,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상호간에 의욕이 앞선 가운데 잠시나마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의 진통을 겪는 가운데 양측의 지도자들간에 "궁극적으로는 양돈인들이 주축이 되어 양돈자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지난 6월 19일에는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기에 이르렀고 양돈자조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1차적으로 자조금 거출금의 조성여부와 거출금의 수준 등을 결정할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련 내용과 방법 등을 순조롭게 합의·의결하였다.

한편 축산자조금법은 양돈자조금의 거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

▲ 지난 9월 2일에 개최된 제2차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

기 위한 대의원의 총수를 200명으로 규정하고 선출구별 대의원수는 선출구별 양돈농가와 돼지사육마리수를 고려하여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구별 대의원을 배분하고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계통 행정조직을 통해 시·군·구별 돼지의 사육농가와 사육두수를 전수조사 해야 하는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돼지사육과 관련된 전수조사의 보고와 집계결과가 늦어짐으로써 9월 2일에야 제2차 공동준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제2차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대의원 선거권자를 돼지 3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제한키로 했던 1차 회의 합의 사항을 수정하여, 법의 규정에 따라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5,000여의 모든 양돈농가가 대의원 선거에 참여토록 결정하였다.

또한 대의원 선거일을 11월 12일로 확정하는 일을 포함한 대의원선거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자조금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렵고 많은 절차가 산적해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일이다.

대의원의 선출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구안에 있는 양돈농가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3분의 2이상을 생산하는 양돈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는 일이다. 양돈농가들은 "나 혼자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대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내 산업을 내가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의원 선출 투표가 시행될 예정인 오는 11월 12일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기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을 얻는 일이다.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의무자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출된 대의원들로부터 자조금의 거출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양돈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선출된 대의원들은 물론 일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양돈자조금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렵고 많은 절차가 산적해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일이다. 둘째,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을 얻는 일이다. 셋째, 거출금의 한도를 적정히 결정하는 일이다. 넷째, 거출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일이다. 다섯째, 거출된 자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이다. 여섯째, 자조금사업의 객관적인 평가와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이다.

셋째, 거출금의 한도를 적정히 결정하는 일이다.

의무자조금의 거출한도는 돼지 거래가격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의 거출한도는 이론적으로는 소비촉진 활동과 관련된 광고·홍보·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험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적정수준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축가로부터 징수하는 자조금은 축산물 생산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촉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그 거출금액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소기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넷째, 거출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일이다.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의 거출에 대한 찬성을 얻고 거출한도가 결정되면 수납기관인 돼지의 도축업자나 돈육의 가공업자에게 자조금의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수납자인 도축 및 가공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일이다. 자조금의 징수업무가 비록 도축업무에 추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양돈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도축 및 가공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원활한 소비촉진 활동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된다면, 양돈농가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돈농가는 물론 돼지의 도축업자와 가공업자 등 양돈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에 도축업자나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제인 것이다.

다섯째, 거출된 자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이다.

의무자조금제도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정착·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돈농가들로부터 거출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양돈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은 국내산 돈육의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홍보 및 광고, 소비자 영양교육, 조사연구, 제품개발, 수출촉진 등과 자조금의 운영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자조금법은 자조금의 관리·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 즉, 양돈농가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열쇠는 자조금의 부담자인 양돈인 스스로 쥐고 있는 셈이다.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양돈농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조금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에 관한 회계도 다른 회계와 독립적으로 구분·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실질적 집행은 궁극적으로 양돈생산자단체(단독 또는 공동)에 설치되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게 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관리사무국의 자조금에 대한 업무집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은 기존의 생산자단체와 업무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유지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관리위원회(해당 축산물 소비촉진위원회)를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조금사업의 객관적인 평가와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는 매년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하되, 자조금제도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공익에 관계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자조금사업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협조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불어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기금지원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양돈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양돈자조금사업은 어느 특정한 생산자단체나 기관의 편익을 위한 자조금사업이 아니다. 즉, 대한양돈협회의 자조금사업도, 농협중앙회의 자조금사업도, 더욱이 정부의 자조금사업도 아니다.

대한민국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양돈농가들의, 양돈농가를 위한, 양돈농가들의 자조금사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돈산업 관련자 모두가 서로 협조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양돈자조금사업이 순조롭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양돈농가와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와 농협, 그리고 도축업자, 가공업자, 정부 등 모든 양돈산업관련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기대한다. 양돈